##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41 발의연월일: 2024. 5. 2.

발 의 자:황 희·허 영·박지원

김준형 • 이건태 • 한민수

주철현 • 전용기 • 정성호

안규백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,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 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~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,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 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 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,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7호, 제7호의2, 제7호의3, 제8호를 각각 제8호, 제8호의2, 제8호의3,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을 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13조의 우주항공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. 다만,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우주항공청장에게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 관련하여 발사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) ① 우주항공청은 효율적인 발사허가를 위하여 동일 발사체,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발사 운영자에 대하여 발사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발사면허의 기간, 발급절차, 검토사항, 변경 등

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제11조"를 "제11조 및 제11조의2"로, "발사허가"를 "발사허가 또는 면허"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발사면허의 취소 및 청문)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면허를 취득한 경우
  - 2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발사면허 취소를 요청한 경우
  - 우주발사체 또는 우주발사장 또는 발사안전관리 시스템의 안 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
  - 4.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제8조 및 제11조"를 "제8조, 제11조

및 제11조의2"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1조의2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받은 자 제27조제1항 중 "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"를 "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발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가우주위원회) ① (생	제6조(국가우주위원회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	②
을 심의한다. 다만, 제6호의 사	
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	
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	
생략할 수 있다.	<u>.</u>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7.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에 관
	<u>한 사항</u>
<u>7</u> . (생 략)	<u>8</u> . (현행 제7호와 같음)
<u>7의2</u> . (생 략)	<u>8의2</u> . (현행 제7의2호과 같음)
<u>7의3</u> . (생 략)	<u>8의3</u> . (현행 제7의3호과 같음)
8. (생략)	<u>9</u> .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)	제11조(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
	보상의 필요가 있을 시 국방
	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
	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
	있다.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
	까지, 제13조의 우주항공청장은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제1</u> 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<u>발사허</u> <u>가</u>를 받을 수 없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국방부장관으로 본다. 다만,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우주항공청 장에게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 체 관련하여 발사 시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.

- 제11조의2(우주발사체의 발사면 허) ① 우주항공청은 효율적인 발사허가를 위하여 동일 발사 체,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하여 발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발사면허의 기간, 발급절차, 검토사항, 변경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결격사유) -----

----- <u>제</u> 11조 및 제11조의2 ---- <u>발사허</u> <u>가 또는 면허</u> 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발사면허의 취소 및 청 문)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취소할 수 있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발사면허를 취득한 경 우
- 2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 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이 예상되어 발사면허 취소를 요청한 경우
- 3. 우주발사체 또는 우주발사장 또는 발사안전관리 시스템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
- 4.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16조(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) ①・② (생 략)
  -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  - 3. (생략)
  - ④・⑤ (생략)
- 제27조(벌칙) ①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하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책임) <u>제8조, 제11조 및 제11조</u>
<u>의2</u>
<u>.</u>
제16조(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
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- <u>.</u>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1조의2에 따라 우주발사
체 발사면허를 받은 자
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27조(벌칙) ①
<u>변</u>
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
1조의2에 따른 발사면허를 받
지 아니하고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